
 <b>국토해양부</b> <small>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</small>	<b>보 도 자 료</b>		 <b>국민의 땅</b> <b>국민의 바다</b> <small>국토해양부</small>
	배포일시 2009. 12. 22(화) 총 2매(본문 2, 붙임 0)		
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	담당자 • 과 장 문성요, 사무관 오영록 • ☎ (02)2110-8249, 8250 ohyr80@korea.kr		
보 도 일 시	2009년 12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통신, 방송, 인터넷은 12.22(화) 18:00 이후 보도		

## 장기공공임대주택 “국가 지원과 복지 강화”

###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제도화...리모델링·재건축시 용적률도 완화

□ 국토해양부(장관 정종환)는 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’(이하 “삶의 질 향상법”이라 함) 하위법령이 12월 22일(화)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

○ 법률과 함께 ‘10.1.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□ 내년부터 시행되는 삶의 질 향상법령에서는,

①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\*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

\* 영구임대주택, 50년 임대주택, 국민임대주택

-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부대·복리시설 개선사업,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명시하였다.

②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

-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·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% 범위 내에서 완화하며,

-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하였다.

③ 또한,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

-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.

□ 국토해양부는 ‘삶의 질 향상법령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며,

○ 앞으로,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,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